

● 제287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 6. 1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이병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687

I. 조례안 개요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외 17명 공동발의)
- 나. 제출일자 : 2019년 5월 24일
- 다. 회부일자 : 2019년 5월 30일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 반려동물 보유가구는 20.4%이고, 향후 반려동물을 키울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49.1%(※출처: 「서울인포그래픽스」 제227호, 2017. 3. 20.)로서 앞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세임.
- 나. 그러나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적절한 방법이 없어 비인도적인(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임.
- 다.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반려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음. 따라서 반려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각 자치구가 반려동물장묘시

설을 설치 및 운영할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반려동물과 공존하여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으로 하여금 반려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1항 신설)
- 나. 시장이 반려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는 자치구 또는 소속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2항 신설)
- 다. 시장 또는 구청장이 반려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3항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참조)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개정안의 취지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동물보호법 제33조의2의 개정사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반려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서울시 및 자치구, 그리고 각 소속기관이 반려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때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반려동물장묘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가. 반려동물 장묘시설의 내용

- 반려동물의 경우 반려동물의 사망시 사체의 처리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일반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반려동물의 사망시 그 사체를 일반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는 행위가 비인도적이라는 지적이 이루어지고 있음.
 - 동물 사체 처리 방식은 전술한 생활폐기물로 처리, 동물병원에서 소각하는 의료폐기물로 처리, 동물장묘업체의 화장의 합법적인 처리 방식임.
- 동물장묘(업)은 동물전용의 장례식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을 설치 운영할 때 구청장에게 등록 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반려동물의 사체를 인도적으로 처리하고 공중위생상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러한 이유로 동물애호단체 등에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요구가 있는 상황임.

나. 반려동물 장묘시설 관련 논의

- 동물보호단체 등은 반려동물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 반려동물 사체의 인도적인 처치와 공중위생 차원에서의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또한 관련 전문가 들은 반려동물만이 아닌 모든 동물(실험동물, 안락사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인도주의적인 동물장묘처리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다만, 반려인과 비(非)반려인의 정서적 차이 고려 필요함.
- 서울시는 정책박람회(2017년)를 통해 공공 반려동물장묘시설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찬성의견(54.1%)이 높게 나타났으나, 반대의견이 24.2%로 나타났고, 모른다는 응답이 21.7%로 나타난 바, 반려동물장묘시설에 대한 인식(또는 공공반려동물장묘시설)은 낮은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비반려인의 경우 반려동물장묘시설을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지 않거나 때로는 (시설의 위치, 예산 편성 등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 갈등을 유발할 소지는 있다고 할 것임.
- 현재 사설 반려동물 장묘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바, 현재 동물장묘업 등록회사는 국내 36개소(경기도 15, 경남 6, 충남 4, 충북 3, 경북 2, 전북 1, 광주 1, 부산 1, 대구 1, 광주 1, 세종 1, 강원

1)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시설의 경우 김해, 제주, 임실 많은 지자체에서 공공장묘시설을 설치하고자 진행 중이나 추진 경과가 불투명한 상황임.¹⁾

- 반려동물장묘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지하며, 혐오시설에 대한 거부감이 공공반려동물장묘시설의 설치를 어렵게 만들고 있음.
- 동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가 반려동물장묘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자치구가 설치·설치 운영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라고 하겠음.
- 서울에는 반려동물 장묘시설이 없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반려동물이 있는 서울시민들의 불편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반대로 공공의 반려동물 장묘시설의 경우 주민 반대와 같은 문제에 부딪힐 수 있어 서울시나 자치구가 실제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있다고 할 것임.
- 또한 주민과 관의 갈등상황이 예견되는 만큼 자치구 단위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짐.
- 다만, 서울시는 자치구가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시 보조금(자치단체경상 자본보조)을 지급하는 방법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적절한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됨.

1) 내일신문 '주목받는 지자체 동물장묘시설 공모사업' 2019년 3월 18일

다. 이 외의 개정사항

- 이 외의 개정사항은 조문상 오탈자의 수정과 관련한 사항으로 특별한 쟁점사항은 없다고 할 것임.

3 개정안의 법률적 검토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동물보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동물보호법」 제33조의 2와 3²⁾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3조의 2(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운영 등)는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의 3(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사용료 등)은 사용료의 징구와 관련한 사항임.
 - 상위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설치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경우 [별표 9]에서 동물장묘시설의 영업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공설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2) 「동물보호법」 제33조의2(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이하 "공설 동물장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의3(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사용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이를 고려할 때 한 바, 서울시가 설치하기 보다는 자치구가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동 조례 개정안은 자치구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다만, 「동물보호법」 제33조의2 2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는 국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있어 국비와 시비가 동시에 반영되는 경우 자치구의 사업여건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2. 개별 기준

가. 동물장묘업

- 1)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장례 준비실과 분향실을 갖춰야 한다.
- 2) 동물 화장시설과 동물 건조장시설
 - 가) 동물 화장시설의 화장로는 3기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동물 화장시설은 예외로 한다.
 - 나) 동물 화장시설의 화장로와 동물 건조장시설의 건조·멸균분쇄시설은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히 연소하거나 건조하여 멸균분쇄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고, 다른 시설과 격리되어야 한다.
 - 다) 화장로와 건조·멸균분쇄시설에는 연소, 건조 및 멸균분쇄로 생기는 소음·매연·분진 및 악취를 막을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라) 화장로와 건조·멸균분쇄시설의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녹화장치를 사각지대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 3) 냉동시설 등 동물의 사체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 4)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야 하고, 유골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한다.
- 5) 1)부터 4)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장묘업 시설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6)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1)부터 5)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다만 집행부(법무담당관)는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개정안	집행부 의견
제27조(반려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33조의 2에 따라 반려동물장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u>자치구 또는 소속기관</u> 이 반려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소속기관’이 자치구의 소속기관인지 시의 소속기관인지 그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여 <u>“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으로 문구를 수정</u> 의미를 명확히 해줄 필요성 존재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반려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u>법 제33조의3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다.</u>	반려동물장묘시설 이용시민의 사용료 및 관리비 부과규정의 경우 자치구에서 설치하는 시설은 자치구의 조례에 의해 정하여질 사항이므로 <u>“부과방법 및 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u> 로 단서 규정을 추가 요청

4 종합의견

-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반려동물의 사체를 인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안임.
- 개정안은 서울시가 직접 설치하는 것 외에 자치구가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국비지원과 시비 지원으로 인해 자치구의 사업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할 것임.